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아 주 대 학 교

목 차

FAQ	1
2021학년도 전형 요약 및 주요사항	4
1. 모집인원	5
2. 전형일정	6
3. 전형료 및 환불규정	7
4. 지원자격	8
5. 전형방법	16
6. 동점자처리기준	18
7. 제출서류	19
8. 장학혜택	22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23
서식자료	27

FAQ

전형 지원자격 및 선발 관련

Q1	3학기제 학교에서 10학년 2term 중간에 편입하여 10학년 3term까지 다녔습니다. 10학년 전체 수업일수 대비해서는 1/2를 채웠는데 2학기제 기준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10학년 2term의 성적을 정상 취득하였다면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2학기제 기준 1개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학기 중 2개 학기를,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기 이수 기준은 1. 해당 학교의 이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우선 적용 2. 해당 학기 성적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학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해외 체류일수는 보호자 243일, 학생 273일이 기준인가요?
A2	일반적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43일, 273일이 기준이 되며, 윤년이 적용되는 경우 366일이 기준이 되므로 244일, 274일이 됩니다.
Q3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해외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했는데, 학제차이로 인해 중국에서 7학년 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해 7학년에 중복학기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제외하면 3년특례 자격요건은 충족하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중복학기가 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학제 상 누락된 이수학기가 있을 경우 중복학기 이수내역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4	졸업을 한지 3년 이상 경과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졸업연도 제한 없이 기존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저는 A학과 지원자입니다. 제 친구는 같은 단과대학에 속한 B학과 지원자로 저보다 시험성적이 낮는데 제 친구는 합격이 되고 저는 예비순위를 받았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단과대학별로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합격을 하지 못한 건가요?
A5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년특례는 [단과대학별 순위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가능범위] 내에서 합격이 가능하므로, 성적이 높더라도 모집단위의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등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년특례의 합격자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모집단위 지원자 중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에 따른 합격자 선발 ② 위 순위에 의한 합격자 중 특정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모집단위의 최대모집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인원은 예비순위자로 판정 ③ ②번 기준에 따라 예비순위자로 변경된 인원만큼 타 모집단위를 지원한 차순위자 선발 질문자께서는 A학과 지원자 중에서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등수를 받음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12년특례) 학제 차이로 인해서 1학년 1학기를 건너뛰고 1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해외 학교에서 이수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A6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이수학기 부족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7	(12년특례) 아직 TOPIK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3급 성적이 없습니다. 추후 취득 예정 자격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7	네, 지원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시점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020년도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험표 등)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08.31.(월)까지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변동/취소 등으로 인하여 2020.08.31.(월)까지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예정 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Q1	작년에 졸업하면서 졸업증명서를 받아왔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발급받으러 다녀와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최신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재발급받기 어려운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부득이 기존 발급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2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A2	해외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은 학교장 직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3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로 고교시절에 작성했던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싶은데 매수제한 때문에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의학과 지원자는 A4 단면 총 15매 범위 내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매 범위 내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의 중요 부분만을 발췌해 3개 페이지로 첨부할 경우 1~3페이지는 연구 과제를, 나머지 12페이지만큼 다른 추가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축소복사·다단편집·양면 인쇄 등 편집을 통해 추가제출자료 양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로 제가 받은 트로피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4	원칙적으로 추가제출서류는 성적표, 증명서 등 서류형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트로피를 추가제출자료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트로피를 지참해 입학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의학과) 저는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는데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면접 시 참고자료로 쓰일 뿐 별도로 평가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지원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Q6	비용 및 기간 문제로 지원자격 증빙서류의 원본이 1부밖에 없는데요, 3개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A6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서류도 원본에 준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또는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본교에 방문하실 경우 본교에서 원본 대조 확인 후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방문제출에 한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의한 자격인정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학교가 휴교해 학생만 귀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양식 - 해당 학교의 증명서(또는 레터) 발급 가능 시 해당 서류 - 관련 증명서 발급 불가 시 [수업조정 확인서](본교양식)를 해당 학교에서 확인받아 제출
Q2	휴교가 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외국인 출입국제한조치 때문에 임시 귀국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2	공식적인 휴교, 등교제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수업조정 확인서](본교양식)의 '조정형태'항목 '기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3년특례(모집인원내)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12년특례 및 새터민(모집인원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1.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지원자격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명)	전형방법		반영비율(%)			
					수강능력 시험	면접	서류평가	비고
3년특례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34	일괄합산		100	-	-	면접 없음
	의학과	2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간호학과	1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2년특례	전 학과 (의학과 제외)	제한 없음	일괄합산		-	100	P/F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20명 선발
				2단계	60	40	-	
새터민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P/F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40	30	30	수능최저학력 기준 있음

2. 수강능력시험

모집단위	출제분야	출제범위	출제문항	시험시간
인문계열	영어(50점), 국어(50점)	한국 고교 교육과정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에 준함) ※ 수학 : 수학(가)형 기준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통합 90분
자연계열	영어(50점), 수학(50점)			

3. 전형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0.07.20.(월) 09:00 ~ 07.24.(금) 17:00까지	- 인터넷 접수
수강능력시험	2020.08.09.(일) 10:00 ~ 11:30 예정	- 3년특례 : 전체 - 12년특례 : 의학과 - 새터민 : 의학과, 간호학과
면접	2020.08.29.(토) 13:00 예정	- 3년특례 :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 - 12년특례 : 전체 지원자 (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 새터민 : 전체 지원자 - 의학과 면접시간 별도 공지(오전 예정)
최초 합격자발표	2020.09.18.(금) 16:00 예정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통보 없음)

4.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영주교포 자녀	재직증명서 불필요	재직증명서 제출
새터민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 인정 불가	(새터민에 한함) 국내 검정고시 인정 가능
해외근무자 자녀	배우자 동반 체류 의무 없음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 및 체류일수 충족
유학생 자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 불가
해외상사직원 자녀 제출서류	본인, 보호자 각 1부	본인, 부, 모 각 1부

1. 모집인원

계열	대학명	모집단위	3년특례: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12년특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선발인원(명)		선발유무	선발유무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자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	10	○	○
		산업공학과★	4		○	○
		화학공학과★	2		○	○
		신소재공학과◆	2		○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4		○	○
		환경안전공학과★	2		○	○
		건설시스템공학과★	2		○	○
		교통시스템공학과◆	2		○	○
		건축학과●	4		○	○
	정보통신 대학	전자공학과★	7	7	○	○
		소프트웨어학과◆	3		○	○
		사이버보안학과◆	1		○	○
		미디어학과◆	4		○	○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2	4	○	○
		물리학과◆	2		○	○
		화학과◆	2		○	○
		생명과학과◆	2		○	○
	의과대학	의학과	2	2	○	○
	간호대학	※간호학과(4)	1	1	X	○
인문	경영대학	경영학과	3	3	○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5	○	○
		※영어영문학과◆(6)	3		○	○
		※불어불문학과◆(3)	2		○	○
		사학과◆	2		○	○
		문화콘텐츠학과◆	2		○	○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과	3	5	○	○
		행정학과	2		○	○
		심리학과	2		○	○
		사회학과	2		○	○
		정치외교학과	2		○	○
모집인원			37명 선발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
ex) 인문대학 모집인원 총 5명에 해당하는 1~5위 학생의 지원학과가 각각 국어국문학과 1명, 영어영문학과 1명, 문화콘텐츠학과 3명일 경우 문화콘텐츠학과는 최대모집가능인원 제한에 따라 2명만 선발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1명의 미충원 인원은 문화콘텐츠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차순위자로 선발
- 12년특례의 경우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인증기간(2020.3.~2024.2., 4년간)
-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프로그램(학사학위과정)인증 획득, 인증기간(2018.6.14.~2023.6.13., 5년간)
- 건축학과는 입학 후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4년제) 중 전공을 선택함
-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전공
◆: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공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 심화과정 운영 / 건축공학전공(4년제)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 교직과정이 운영되는 전공으로 ()는 교직이수 가능 인원임(병동 가능), 2학년 진급 시 교직이수자 선발
- 공학교육전문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의 학생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및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0.07.20.(월) 09:00 ~ 07.24.(금) 17:00까지	*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입학처 홈페이지 : www.iajou.ac.kr - 진학사 원서접수 : www.jinhakapply.com *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마감 당일은 17:00까지만 접수
자기소개서 수정기간	2020.07.28.(화) 낮 12:00까지	*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작성본과 출력 제출본이 동일해야함 * 3년특례(의학과, 간호학과), 12년특례 및 새터민(전체)만 작성
서류제출	2020.07.28.(화)까지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가능) -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울곡관 102호) 재외국민전형 담당자 * 해당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발송 시 내용물 필히 확인)
제출서류 확인	2020.07.31.(금) 16:00이후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강능력 시험	2020.08.09.(일) 10:00 ~ 11:30 예정 - 3년특례: 전원 응시 - 12년특례: 의학과만 응시 - 새터민: 의학과, 간호학과만 응시	* 고사장 및 수험생 유의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전형 당일 해당 고사장 확인 후 입실(별도 집결장소 없음) * 준비물 1. 수험표 2.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표기), 동사무소 발급 임시 신분증) 3. 필기도구 * 수험표와 신분증 미지참자는 입실 불가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08.19.(수) 16:00이후 3년특례 의학과, 간호학과 및 12년특례 의학과만 해당	
면접	2020.08.29.(토) 13:00 예정 (의학과는 별도 공지) - 3년특례: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만 응시 - 12년특례, 새터민: 전원 응시 (단, 12년특례 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최초합격자 발표	2020.09.18.(금) 16:00이후 ----- 새터민 의학과·간호학과: 2020.12.27.(일) 예정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통보 없음, 본인 확인)
최초합격자 등록	2020.12.28.(월) ~ 12.30.(수) 16:00까지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서등록(별도 등록예치금 납부 없이 등록의사만 확인)
충원합격자 발표	2020.12.31.(목) ~ 2021.01.04.(월) 21:00까지 [등록은 각 발표일 다음날 16: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3년특례만 해당함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단, 필요 시 개별 전화통보를 할 수 있음]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2021.01.05.(화)	* 등록 마감시간: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1.02.08.(월) ~ 02.10.(수)	* 정시 등록기간과 동일
최종 서류제출	2021.02.25.(목)까지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 * 원서접수 당시 3년특례의 3년 기간 미충족자로서 3년 충족 예정자인 최종합격자

- 3년특례는 미등록충원을 실시하며, 12년특례 및 새터민은 미등록충원을 실시하지 않음
-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홈페이지/전화 충원합격자)는 이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형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접수 시에는 출신학교 및 주소/전화번호, 학과/전공(해당자), 재학기간, 자기소개서 등을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함. 허위 기재할 경우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입학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 적발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접수 개시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외국발급 서류 예외)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 상기 각 일정은 학교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전형료 및 환불규정

가. 전형료: **150,000원**

나. 전형료 환불

- 1)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타지원자의 피해방지(예: 경쟁률 조작)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 2) 전형료 반환사유(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②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 질병, 사고, 본인의 사망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2)의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팩스, 등기우편)**해야 함
- 4) 2)의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팩스, 등기우편)** 후, 본교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신청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함

신청시기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이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4일 후부터 수강능력시험 전까지	전형료의 50%
수강능력시험 이후	반환하지 않음

※ 타대학과의 입학전형일정 중복 또는 개인사정 등의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제5항)

4. 지원자격

가. 3년특례(모집인원내: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1) 공통사항

- 가)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고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 해외에서 수료해야 함
- 다) 학력요건, 해외재학기간 및 해외 체류일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라)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구분

자 격 구 분			자 격 기 준
3 년 특 례 (모 집 인 원 내)	영주교포자녀		-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해외 근무자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 상사직원 자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기타 재외국민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현지 자영업자 ② 현지법인 ③ 해외파견 교직원 ④ 해외 선교활동
※ 해외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교육부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교원의 경우 해외파견 교직원 자격에 해당함			

3) 자격기준 요약

자격기준	세부내용
학력요건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개 학기 결손까지 인정 가능(23학기, 총 11년 6개월 이상)
해외재학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해외 체류일수	학생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해외 체류 부모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 체류
해외 재직기간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4) 자격기준 세부

자격기준	세부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비연속 인정)
해외 체류일수 조건	해외재학기간 3년에 해당하는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가) [보호자] 해외근무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해야 함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외상사의 경우 해외파견 발령기간 기준, 현지취업자의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
- 3년특례 기준이 되는 해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

나) [학생] 학력요건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국내고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도 총 재학기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학교 학년제에 따른 고졸학력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다) [학생] 해외재학기간

-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비연속 인정)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제3국 수학 미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이수학과와 외국 이수학과가 중복된 경우 외국학과를 우선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예시) 학사일정 : G8(17.8.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재학기간 : G8(17.9.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 G8 도중 편입으로 인해 재학기간이 1개월 부족하므로, G11 1개월 추가 재학 필요
G8(17.9.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G11(20.8.1.~8.31.)

라) [학생, 보호자] 해외 체류일수

-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3개년도(6개 학기)에 대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보호자는 2/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 및 보호자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파견(해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 해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구 분	기 간
해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보호자 해외근무기간	해외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해외재학기간	해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해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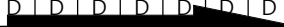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해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사례>

CASE 1	■ 학사일정 : G9(17.3.2.~12.30.), G10(18.3.4.~12.31.), G11(19.2.28.~12.27.) ■ 재학기간 : G9~G11(17.3.2.~20.3.1.) ■ 체류일수 산정 : 다음의 각 기간에 대하여 보호자는 2/3 이상, 지원자는 3/4 이상 해외 체류 - 기간1 : 2017.03.02. ~ 2018.03.0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18.03.02. ~ 2019.03.0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019.03.02. ~ 2020.03.0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CASE 2	■ 학사일정 : G9(17.3.2.~12.30.), G10(18.3.4.~12.31.), G11(19.2.28.~12.27.), G12(20.3.2.~12.30.) ■ 재학기간 : G9 도중 편입, G9~G11+G12(17.4.2.~20.4.2.) ■ 체류일수 산정 : I, II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 <table border="1"> <tr> <td>I</td><td>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tr> <tr> <td>II</td><td>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tr> </table>	I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보호자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보호자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학력요건 및 해외재학기간 관련 자격 충족·미충족 사례>

- D : 국내 이수학기 / A : 해외 이수학기
- 학력요건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학제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개 학기 결손 인정 가능)
-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비연속 가능)

Case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여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재학 기간														D	D	D	D	D	D	누락						불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인정						불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3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A	A				A	A	A	A					
4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불인정		
																A	A	A	A	A	A								
5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인정		
																					A	A	A	A	A	A			
6	재학 기간	D	D	D	누락						D	D	D	D	D	D	D	D	D	D	인정						불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7	재학 기간	D	D	D	D					인정	D	D	D	D	D					인정	D	D	D	누락					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Case	자격충족 여부	상황	학력요건, 해외재학기간 기준
1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충족 해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자격미달)
2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6-2)로 누락학기(10-1) 인정, 총 24학기 충족 해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자격미달)
3	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비연속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8-1, 8-2, 10-1)를 중복 산정하지 않더라도 총 재학학기 24학기를 충족 해외재학 - 중·고등학교 기간 중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비연속 6개 학기(8-1, 8-2, 10-1~11-2)를 이수하여 기준 충족
4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중 고등학교 1년 미포함	학력요건 - 총 24학기 충족 해외재학 - 6개 학기 중 고등학교과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어 해외재학기간 기준 미달
5	충족	학력요건(24학기) 중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만족 해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6	미충족	중복학기로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5-1, 5-2)는 누락 1개 학기로 대체 인정 가능함(2개 이상 연속된 중복이수학기라도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 인정) -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22학기로 부족(자격미달) 해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7	충족	중복학기로 복수의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2-2)는 누락 학기(4-2)로, 중복 학기(6-2~7-1)은 누락 학기 (9-1)로 대체 인정 가능함.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여 총 23학기로 자격 인정 해외재학 - 비연속 6개 학기(7-1~8-2, 11-2~12-2) 만족

나. 12년특례(모집인원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공통사항

- 가)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국내 학교 재학여부와 무관함
- 다) 해당 국가의 방학, 휴일 등에 의해 국내에 임시 체류한 기간이 있더라도 지원 가능
- 라)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마)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바)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구분

자 격 구 분		자 격 기 준	
12 년 특 례 (모 집 인 원 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 필수 제출 (단,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제외함)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제외함 (별도선발)	
	전 교육과정 이수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자격기준 세부

가) 학력요건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국내 이수학기와 외국 이수학기가 중복된 경우 외국학기를 우선 인정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나) 해외재학기간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자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제별 자격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새터민(모집인원외 : 북한이탈주민)

1) 공통사항

- 가)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2) 자격기준 세부

- 가)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에 한하여 적용

학 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의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간호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되는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기간에 대한 인정

1)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내 전체 전형 지원자 해당

2) 관련 소명자료 예시

사유 구분	소명자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모두 제출)
해외 학교 휴교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해당 학교) 휴교 관련 증빙 ※ 별도 증빙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 양식(수업조정 확인서) 활용
해외 지사 또는 현지법인 휴업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해당 업체/본사/법인 등) 휴업 관련 증빙
기타 사유 (출국조치 등)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본교 양식) 수업조정 확인서의 기타 사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학교장 확인

3) 인정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제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음

5. 전형방법

가. 지원자격별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수강능력 시험	면접	서류평가	계	비 고
3년특례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	-	100%	면접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00%	-
12년특례	전 학과 (2쪽 모집인원 참고)	일괄합산	-	100%	-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20명 선발(예정)
		2단계	60%	40%	-	100%	-
새터민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일괄합산	40%	30%	30%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 전형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학 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의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간호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되는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나. 수강능력시험

- 1) 대상 : 3년특례, 12년특례 의학과,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 2) 평가방법 : 계열별(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하여 실시

모집단위	출제분야	출제범위	출제문항	시험시간
인문계열	영어(50점), 국어(50점)	한국 고교 교육과정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에 준함) ※ 수학 : 수학(가)형 기준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통합 90분
자연계열	영어(50점), 수학(50점)			

다. 면접

1) 면접 대상

전형 구분	면접 대상자
3년특례	간호학과 의학과 1단계 합격자
12년특례	지원자 전원 ※ 단, 의학과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함
새터민	지원자 전원

2) 전형 방법

구분	모집단위별 전형 방법			
	전체 학과 (의학과 제외)	의학과		
면접시간	- 15분 내외	- 30분(고사실당 10분씩 3개 고사실) 내외		
면접진행 방식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이 1명의 수험생을 평가 예정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총 6명)이 1명의 수험생을 평가 예정 - 수험생은 주제별 고사실(서류기반, 지성, 인성 총 3개)에서 면접진행 예정 - 지성(생명과학 유력) 및 인성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지며, 3~5분정도 사전 준비시간 제공할 예정		
평가내용	- 입학 후 수학능력 및 수험생의 특성 등에 대한 구술 면접	- 중 · 고교성적, 자기소개서, AP, SAT, GCE-A Level, IB등 해외 학력평가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과학, 기술관련 서술형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해석능력과 과학적인 사고력을 측정 - 우리말로 된 긴 지문을 주어 질문의 요지파악 능력, 답변의 간결성과 적절성 등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평가항목	학교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서류기반	학업능력
		리더십 활동		전공적합성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회성		자기개발
		자아관, 세계관		리더십 등
	지원동기 학업계획	학교/학과 지원 동기	지성	능력/열정
		학업계획		창의성/도전성 등
의사소통 표현력	이해력, 일관성, 논리성	인성	윤리/소통/사회적책무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다양성/인문소양 등	

※ 시간, 진행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위원 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라. 서류평가

- 1) 대상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 2) 서류평가 :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요소
학업능력(학업잠재력)	대학수학 기초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전공적합성	전공선택 동기 및 관심도
	학업계획 등
인성 및 태도	대인관계(협동성) 및 교과외 활동
	일반 인성(책임감, 성실성 등) 등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체 선발

나.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순 위	판 정 기 준
1순위 [수강능력시험] (해당자)	- 계열별 과목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별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과목별 총점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과목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정답 수가 많은 순으로 판정함 * 계열별 과목우선 순위 - 인문 : 국어→영어 / 자연 : 수학→영어
2순위 [면 접] (해당자)	-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총점이 같은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판정함 (복수의 평가항목이 동일한 배점인 경우, 항목별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항목이 많은 순으로 판정함)
3순위 [재학 학기 수]	- 외국학교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외국학교 재학학기 수가 같을 경우, 총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12년특례 및 새터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은 1순위[수강능력시험]를 적용하지 않음(1순위 [수강능력시험]은 3년특례, 12년특례 의학과,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만 적용)

※ 면접 미 실시 전형은 2순위[면접]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3년특례는 면접 미 실시)

※ 상기 각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로 인해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함)

7. 제출서류

가. 3년특례(모집인원내: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 의학과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서류 제출 가능함(A4 15페이지 이내)

※ 의학과를 포함한 3년특례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함

No	제출서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비 고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상사 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자영업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사	
1	입학원서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의학과, 간호학과만 해당)	○	○	○	○	○	○	○	○	○	
3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4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	○	○	○	○	○	○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초·중·고 재학증명서(학생부)	○	○	○	○	○	○	○	○	○	
7	초·중·고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8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1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	○	○	○	○	○	○	○	○	총 2부 (학생 1부, 부/모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발행처 - 민원24(인터넷) - 주민센터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11	여권 사본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발행처 - 영사24(인터넷) - 해외주재영사관 - 외교부 별관(종로구)
1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외국근무장소 및 기간 명시
14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현지 법인 등기부등본						○	○			
15	현지 법인 법인세 납부이력*							○			
16	학생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세금납입증명						○				
17	해당기관장의 초청서					○					
18	파송선교사확인서									○	
19	영주권사본 ※ 부, 모, 학생 각 1부	○									영주권 취득일 명기
20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	○	○	○	○	○	○	○	의학과 지원자 중 희망자만 작성

- ◆ 서류 제출 대상자 중 [보호자]는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자(해외근무자)를 의미함
- ◎ 회사 대외비 또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금지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세금납입증명(소득세 납부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 ♣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0.04.20.(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는 **2021.02.25.(목)까지**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예시

- 2020년 2학기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로, 10학년 1학기 ~ 12학년 2학기 3년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점(7월)에 제출한 자격 관련 서류 상 12학년 2학기의 해외근무기간, 해외체류기간, 해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에 대한 최종 증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합격 및 등록 후 2021.02.25.(목)까지 최종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외근무기간 확인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 해외체류기간 확인 : 지원자, 부, 모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해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 확인 : 지원자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
-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 2019.04.기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입학처 방문 제출 시 본교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나. 12년특례 및 새터민(모집인원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의학과**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서류 제출 가능함(A4 15페이지 이내)
 ※ 추천서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

No	제출서류 (대체가능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비 고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1	입학원서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 추천서는 새터민 전형 의학과, 간호학과만 해당
2	자기소개서	○	○	○	○	
3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	○	○		
4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	○	○		
5	(의학과, 간호학과) 새터민전형 추천서				○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7	초·중·고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	○		
8	초·중·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	○		
9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학교 재학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10	여권 사본	○	○	○		
11	출입국사실증명서	○	○	○		발행처 - 민원24(인터넷) - 주민센터
12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	○	○		※ 단, 교육부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제외 ex) 천진한국국제학교 등
1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발행처 - 영사24(인터넷) - 해외주재영사관 - 외교부 별관(종로구)
15	외국국적 증명서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	○		
16	외국인등록증		○	○		국적취득일 명기
17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18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등)				○	관련 법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19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새터민장학 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	혼인관계증명서			○		
21	(의학과)추가제출서류목록표 [◇]	○	○	○	○	의학과만 해당 (추가서류 제출 희망자에 한함)

♣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추천서, 사실증명발급 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0.04.20.(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해외 학교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1.02.25.(목)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 2019.04.기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원서 접수시점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020년도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험표 등)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08.31.(월)까지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
 ※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변동/취소 등으로 인하여 2020.08.31.(월)까지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예정) 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입학처 방문 제출 시 본교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제출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8. 장학혜택(새터민)

구분	새터민장학
혜택 상세	• 입학금 면제,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국비 50%, 교비 50%)
수혜 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자
유의사항	• 새터민장학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전적대학에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을 포함하여 수혜가능 횟수 내에서 지급함 • 장학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자비 납부 등록), 장학 수혜가능 횟수 1회는 그대로 소진됨에 유의 (2020학년도 기준 장학 유지 성적기준 :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장학 유지기준은 학년도별로 변동될 수 있음(문의 : 031-219-2035) • 휴학/복학/해외파견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방학 중인 경우 학기 개시일 1개월 전 까지, 학기 중일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지원팀 연락 필수(새터민장학은 등록횟수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요망)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금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충원)는 등록(예치금 납부, 문서등록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실시하는 이후 모집(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수시 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등록이란 등록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한 상태를 의미함)
- 3) A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수험생이 B대학에 합격하여 B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A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예치금/등록금 환불신청 접수 등)한 후 B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폴리텍 대학,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3.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횟수 계산 기준은 전형임**

나.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수시모집에서 타 대학 및 동일대학의 다른 전형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4. 입학원서 작성 요령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창구 접수 없음)

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다. 원서의 모든 기재정보는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함(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접수 사항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요청서』(본교 양식)를 작성하여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동봉 제출

5. 입학원서 접수 절차 및 방법

- 가.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에서 접수
- 나. 로그인(원서접수 홈페이지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다. 아주대학교 선택(원서접수 대학 중 선택)
-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마. 입학원서 작성/사진 업로드
- 바. 전형료 결제(결제 전 입력 사항 반드시 확인, 전형료 결제 후 수정 불가)
- 사. 원서접수 완료(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임)
- 아. 수험표 출력 및 제출서류 봉투표지 출력
- 자. 서류제출(해당자) : 전형별 제출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가능)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전형료 결제 후에도 기본정보 및 사진 수정이 가능함
(전형 및 지원학과는 수정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전체 수정 불가함)

6.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전형 간 중복지원(3년특례+12년특례 등)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지원자격 미달 또는 전형일 정 중복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함(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나.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됨(**접수기한 내 결제 미완료 시 접수 무효**)
- 다.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된 원서는 지원 철회나 전형/학과 변경, 환불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함(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수정 가능)
- 라. 원서접수 여부 및 경쟁률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
- 마. 수험표 및 본교 양식 서류는 원서접수 후 접수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 바.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7:00까지만 가능
- 사. 문의처: 031-219-3981, 2024

7. 서류제출 유의사항

- 가. 원서 접수 후 전형별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누락 시 해당 서류 미반영 또는 자격미달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나. 서류 발송 시 일반 서류봉투(A4사이즈)에 제출봉투표지(원서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고, 제출서류 해당 ☐란에 체크(v)하여 제출(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가능)
- 다.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입학처 방문 제출 시 본교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라. 제출서류 발송 시 각 서류의 중앙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를 기재
- 마.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8. 합격자 발표 안내

- 가. 합격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을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안내 예정
 - ※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단, 미등록충원을 하는 전형은 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전화로 통보할 수도 있음)**

나. 미등록자 충원 실시

- 최초합격자 미등록 시에는 예비순위자 중 충원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년특례(모집인원내) 전형은 단과대학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순으로 선발함에 따라 모집단위별 등수와 실제 충원 순서가 상이할 수 있음
- 충원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하며(충원합격 발표 마지막 날에는 개별 전화통보를 할 수 있음), 충원합격자(홈페이지에 충원합격자로 발표된 자, 전화로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이후 모집(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복수지원 금지)
- 전형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합격자발표 미확인) 또는 원서 기재 전화번호 연락 두절(3회 이상 연락 시 통화 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연락 두절에 따른 충원발표 불가 시 등록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 합격처리, 수시 합격(최초, 충원)으로 인한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형 결과에 따라 일부 전형/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충원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음

9. 신입생 등록금

가. 합격생은 각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정해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장학생의 경우에도 장학 결제를 진행해야함)

나. 합격사실이 있는 지원자는(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 수시전형 합격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에 따른 등록금 면제 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보훈장학 신청서를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학 후 별도 환불 처리함)

※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처리를 마쳐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 장학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031-219-2038, 입학팀 031-219-2024

※ 등록금 대출 관련: 학생지원팀 031-219-2036

※ 신입생 장학 관련: 입학팀 031-219-2024

10. 등록포기 및 환불

가. 대상: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

나. 신청방법: 입학처 홈페이지 신청(www.iajou.ac.kr)

다. 유의사항

- 1) 환불신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사항 참고
- 2) 충원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합격기회 박탈 및 해당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타대학 등록결정 즉시 지체 없이 환불 신청을 해야 함(마감일 이전 필수)

[기일 경과 후 환불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11.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 가.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제반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지원자격미달, 주요사항 누락** 등 입학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다.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및 민·형사상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름)

12. 신입생 기숙사 입사안내

- 가. 신입생 배정 기준
-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 장학생 우선 배정
 -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 장학생 배정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실제거리 순 배정
※ 단, 거리 순 배정에 의해 동일순위 발생 시 입사희망동, 외국인 룸메이트 동의 여부(국제학사에 해당) 등에 따라 선발
- 나. 신입생 기숙사 입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으로 별도 공지 예정
- 다. 원서 입력 주소와 실제 거주지(현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13.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입학전형 결과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 및 순위와 상관없이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기타 입학전형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공지
- 다.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라. 고교졸업예정자의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 불가 또는 체류일수 미달 등 자격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 (울곡관 102호)

Tel: 031-219-3981, 2021 / Fax: 031-213-5174

www.iajou.ac.kr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3년특례 의학과, 3년특례 간호학과, 12년특례 전체)

자기소개서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작성, 추후 일부 변동가능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고등학교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 서류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본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며, 전형별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출신학교장(또는 발행기관장)이 원본 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하고, 제본하거나 클리어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사무용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화면에 게시된 문항별 제한분량을 확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se KOREAN ONLY!!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3.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자기소개서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작성,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고등학교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 서류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본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며, 전형별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출신학교장(또는 발행기관장)이 원본 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하고, 제본하거나 클리어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사무용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화면에 게시된 문항별 제한분량을 확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성장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3.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학업, 비학업 모두 해당)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타인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봉사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추천서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 지원자 정보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지원학과	학과

■ 추천인 정보

추천인 성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소속		지원자와의 관계	(지원자 기준)
교류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아래 사항은 추천인이 교사인 경우만 작성해주세요.			
지도과목		교사경력	년 개월

[추천인 유의사항]

- 추천인(지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으로 추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교사가 아닌 경우 교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천할 수 없는 사람 : 학원강사 및 학원장, 과외교사, 본인, 가족, 친척, 친구, 기타 특수관계자
-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추천서와 기재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추천서는 학생 제출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십시오.
※ 하단의 추천인 서명을 반드시 추천인 자필로 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학업 및 잠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로 본문을 작성할 경우 추천서의 서식,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절대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확인사항]

- 본인은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귀교가 이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 본인은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인 확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 본인은 추천서 작성 시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가 금지되며, 기재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서

1-1.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해당란에 '○'로 표기하고, 평가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대상			미흡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탁월함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책임감									
2) 성실성									
3) 준법성									
4) 자기주도성									
5) 리더십									
6) 협동심									
7) 나눔과 배려									

* 평가대상 부분은 지원자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1-2. 위 평가항목 중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수 있는 경우 적어 주십시오.
(글림체, 글자크기 10,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500자 이내)

2. 지원 학과(의학과 또는 간호학과)를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비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추천하여 주
십시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반복 기술하지 말아 주십시오)
(글림체, 글자크기 10, 글자수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가급적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 · 중 · 고 수학기간 기록표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 특례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녀 ☐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 현지자영업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 해외선교사 자녀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과정	재학학년, 학기	재학기간 (YYMMDD)	학교명	소재국
ex)초등	1-1 ~ 6-2	09.03.02. ~ 14.02.28.	중앙초등학교	한국
ex)중등	7-1 ~ 9-1	14.03.02. ~ 16.06.30.	중앙중학교	한국
ex)중등	9-2 ~ 9-2	16.08.01. ~ 16.12.31.	Central Middle School	필리핀
ex)고등	10-1 ~ 11-2	17.04.02. ~ 18.11.30.	Central High School	미국
ex)고등	11-2 ~ 12-2	18.12.01. ~ 20.02.28.	중앙고등학교	한국

(12학년제 교육과정 기준 기재, 필요 시 행 추가)

국내 총 재학학기 수		외국 총 재학학기 수										
해외재학기간		해외 이수학기에 ○ 표기 (12학년제 교육과정 기준, 6개 이상 표시) 고등학교(10학년 ~ 12학년) 중 1년(2개 학기)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학년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해외 재학 해당학기												
특이사항	보호자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입양 지원자의 중복수학학기, 월반, 특정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 후 관련 증빙 첨부											

구 분	학력요건기간 중 외국거주기간 (발령, 영주 등)	거주 국가명	영주(시민)권 취득일 (해당자에 한함)	기타 특이사항
보호자1 • 관계 () • 성명 ()	~			
	~			
	~			
	~			
보호자2 • 관계 () • 성명 ()	~			
	~			
	~			
	~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또는 서명)

해외학교 관련 기록표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 특례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 현지자영업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 해외선교사 자녀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재학기간 (학년·학기)	학교명	학제		재학개시 학년도 학사일정 (각 학기 개시일)	주 소 (학교 홈페이지, e-mail 포함)
		학년제	연간 학기 수		
1-1 ~ 6-2	연대한국 국제학교	12학년	2학기	1학기 2007.03.01. 2학기 2007.09.01.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7-1Q ~ 9-3Q	Central Middle School	12학년	4Q	1Q 2008.03.01. 2Q 2008.05.30. 3Q 2008.08.31. 4Q 2008.12.02.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9-2 term ~ 13-3 term	British Royal High School	13학년	3term	1term 2009.08.30. 2term 2010.01.02. 3term 2010.05.03.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 학기 시작 시기는 해당 학교 재학을 시작한 해의 학사일정 기준으로 기재하며, 해당 학교의 학제에 맞추어 한
학년 내의 모든 학기 개시일 기재
-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만 초, 중, 고교 순으로 기재(해당 학교의 공식 명칭 기입)
- ※ 전화번호는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국가코드)-(지역코드)-(전화번호)」 형태로 기재 (예 : 한국 82-2-2173-2074)
- ※ 학교명 및 주소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정확히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의학과) (건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 특례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 현지자영업자 자녀															
	12년 특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 해외선교사 자녀															
	새터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1.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한 후, 아래 목록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가제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2. 추가제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3. 추가제출서류는 A4 단면 총 15쪽 이내로 제출
(1페이지에 1개 내용만 출력, 모아찍기 또는 양면인쇄 불가)
 4. 집계 혹은 클립 사용(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클리어파일 사용 불가)
 5. 추천서는 추가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 상기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미반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번호	서류내용 (성적자료의 경우 성적값도 기재 예: SAT 1000점)	서류발급기관	서류 발급일자	비고
1	예) 재학원 봉사활동 경력 : 치매노인 돌봄 활동 120시간	00복지관	2019.04.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AMPLE-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1. 색상이 어두운 란만 신청인이 작성합니다.(보호자 및 학생 본인 각각 1부씩 작성)
2. 보호자,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여권사본)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학력요건(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아주대학교 입학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219-2024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Applicant Nam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건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 특례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 현지자영업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 해외선교사 자녀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		인정 요청 사유
일자	해당 학년/학기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신청 가능
- ※ 심사 과정에서 확인 및 별도 증빙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미비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제출 자료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음
- ※ 필요 시 행 추가 가능
- ※ 인정 요청 사유는 최대한 정확히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또는 서명)

Confirmation of Class Adjustment

(Due to COVID-19) (견본 – SAMPLE)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Class adjustment type	
Name of School	
Period	to
Class adjustment type	☐ Temporary closure ☐ Commuting restriction (online class) ☐ Other ()

Person in charge of confirmation	
Name	
Position	
Contacts	Phone number :
	e-mail address :

Information of the student (requester for confirmation)	
Name	
Birth date	
Reason for request	Applic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stamp & seal)

(SAMPLE-인터넷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 | | | | | | | | | | | |
|---|------------------------|--|--|--|---------|--|--|----------------|--|--|
| 모집시기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 | | | | | | | |
| 모집단위 | 학과 | | | | 전 형 명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 |
| 수험번호 | | | | | | | | 성 명 | | |
| 연 락 처 | | | | | 보호자 연락처 | | | | | |
| 변경사항 | | | | | | | | | | |
| 수정 요청 | 변경 전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사유
(자세하게 기록) | | | | | | | | | | |
| <div>전형 및 모집단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div> | | | | | | | | | | |
| <div> <div> <div>년</div> <div>월</div> <div>일</div> </div> <div> <div>지원자</div> <div>(서 명)</div> </div> </div> | | | | | | | | | | |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원서에 기재한 본인인 메일주소에서 발송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본인 확인용)